

심 사 보 고 서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: 2021.10.26.

2. 제안자 : 서울특별시장

3. 회부일자 : 2021.11. 1.

4. 상정일자 :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

○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(2021.12. 6.)

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

○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(2021.12.15.)

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

○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(2021.12.31.)

- 원안 가결

Ⅱ. 제안설명의 요지 (기획조정실장 김의승)

- 본 안건은 2020회계연도 결산을 반영하여 2021년 기금운용 규모를 118억 9,400만원에서 169억 5,100만원으로 50억 5,700만원을 증액변경하는 것임

- 먼저 수입계획 변경 내역임
 -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 수입계획 중 '예치금 회수'를 28억 7,100만원에서 78억 6,000만원으로 49억 8,900만원 증액하였으며
 -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4,900만원에서 1억 1,700만원으로 6,800만원 증액하였음

- 다음으로 지출계획 변경 내역임
 - 수입계획 변경에 따라 '여유자금 예치금'을 9,400만원에서 61억 5,100만원으로, 재무활동의 6,436.9%인 60억 5,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,
 - 정책사업비 중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 사업비를 60억원에서 50억원으로 10억을 감액하였음

Ⅲ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엄지운)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2940호, 「**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주거지원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**」은 '21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2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1) 제안이유

-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과 비용자성사업 집행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사회복지기금(주거지원계정) 2021년 수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
-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주거지원계정) 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) 주요내용

-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, 수입계획상 「예치금 회수」 금액이 당초 2,871백만원에서 7,860백만원으로 4,989백만원 증가하였고, 공공예금이자수입 금액이 당초 49백만원에서 117백만원으로 68백만원 증가함
-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재무활동 「예치금」 금액이 당초 94백만원에서 6,151백만원으로 6,057백만원 증가하였음

- 또한 지출계획상 비용자성사업에 아동바우처가 신설되면서 사업비 1,000백만원이 추가되었으나, 3년에 걸쳐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므로 당초 6,000백만원에서 5,000백만원으로 1,000백만원 감액조정함

○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<수입계획>

(단위:백만원)

구분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
계	11,894	16,951	5,057
공공예금이자수입	49	117	68
민간융자금회수수입	6,943	6,943	-
기타회계전입금	1,991	1,991	-
기타그외수입	40	40	-
예치금 회수	2,871	7,860	4,989

<지출계획>

(단위:백만원)

구분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
계	11,894	16,951	5,057
비용자성 사업	6,000	5,000	△1,000
융자성 사업	5,800	5,800	-
여유자금예치	94	6,151	6,057

3. 검토내용
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'20회계연도 결산결과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가 당초 28억 7,100만원 보다 49억 8,900만원 증액된 78억 6,000만원으로 계획변경되고, 공공예금이자수입은 당초(4,900만원)보다 6,800만원 증액된 1억 1,700만원으로 계획변경함에 따라,
-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**일반예산(재무활동)**을 당초(9,400만원)보다 6,443.6%, 60억 5,700만원 증액된 61억 5,100만원으로 변경하고, 정책사업인 **주거복지 수준 제고**의 경우에는 당초 (118억원)보다 △8.4%, △10억원 감액된 108억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임

〈표 3-1〉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 책 사 업	당 초 (A)	기 금 운 용 계 획 변 경 안 (B)	증 감 액 (C = B - A)	증 감 륜 (D = C / A)
지 출 합 계	11,894	16,951	5,057	42.5
주 거 복 지 수 준 제 고	11,800	10,800	△1,000	△8.4
일 반 예 산 (재 무 활 동)	94	6,151	6,057	6,443.6

※ 백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 것임

자료근거 : 서울특별시, 주택정책과-4588 ('21.10.12)

- 관련 법령 등은 “정책사업 지출금액”의 20%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
 - 동 계정의 경우,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**일반예산(재무활동)**을 당초보다 6,443.6%(60억 5,700만원) 증액하려는 사안으로서,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됨

○ 다만, 관련 법령 등은 “정책사업”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

- 동 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에는 당초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①**주거 복지 수준 제고**, ②**일반예산(재무활동)**으로 기재하여야 하나, “비용자성사업, 용자성 사업, 여유자금예치”로 임의기재하여 제출한 바,
- 부정확한 정책사업명을 안전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은 의회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데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생략」

VI. 부대의결 : 「생략」

VI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2021.12.31.)

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주거지원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294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10월 2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과 비융자성사업 집행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사회복지기금(주거지원계정) 2021년 수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주거지원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, 수입계획상 「예치금 회수」 금액이 당초 2,871백만원에서 7,860백만원으로 4,989백만원 증가하였고, 공공예금이자수입 금액이 당초 49백만원에서 117백만원으로 68백만원 증가함
- 나.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재무활동 「예치금」 금액이 당초 94백만원에서 6,151백만원으로 6,057백만원 증가하였음
- 다. 또한 지출계획상 비융자성사업에 아동바우처가 신설되면서 사업비 1,000백만원이 추가되었으나, 3년에 걸쳐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므로 당초 6,000백만원에서 5,000백만원으로 1,000백만원 감액조정함

라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<수입계획>

(단위:백만원)

구분	당초(A)	변경(B)	증감 (B-A)
계	11,894	16,951	5,057
공공예금이자수입	49	117	68
민간융자금회수수입	6,943	6,943	-
기타회계전입금	1,991	1,991	-
기타그외수입	40	40	-
예치금 회수	2,871	7,860	4,989

<지출계획>

(단위:백만원)

구분	당초(A)	변경(B)	증감 (B-A)
계	11,894	16,951	5,057
비용자성 사업	6,000	5,000	△1,000
용자성 사업	5,800	5,800	-
여유자금예치	94	6,151	6,057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김소영 (☎2133-7023)